

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

신청인	감사인 명칭		사업자등록번호	
	대표자 성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	전자우편주소	

(단위 : 명, 건)

감 사 인 신 청 요 건	① 공익법인등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 (9월 1일 기준 과거 2년 이내)						
	② 공익법인등 회계감사 실적 건수	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					
		과거 1년 이내	과거 1년~2년 이내	과거 2년~3년 이내	과거 3년~4년 이내	과거 4년~5년 이내	

※ ①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가 3명 이상 이거나 ②에 따른 회계감사 실적이 과거 5년 이내에 3년 이상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43조의2제3항 및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(대표자) : (서명 또는 인)

국세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감사인 등록증 사본 2. 공익법인등 감사실무교육 이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수료증 등) 3. 공익법인등 회계감사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②에 따른 각 구분기간별로 총자산가액이 가장 큰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보고서 1건) 4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6호서식 부표에 따른 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
------	---

작성방법

- ①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연도의 9월 1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 수를 적습니다.
 - ②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도의 9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 실적(신청서를 제출하는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공익법인등 중에서 감사인의 사업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등의 수)을 적습니다.
- (예) 감사인의 해당 사업연도가 2021.01.01. ~ 2021.12.31.인 경우 2020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등은 2020년 실적에 포함하고, 2021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감사대상 공익법인등은 2021년 실적에 포함

감사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초자료

1. 기본사항

①감사인 명칭		②사업자등록번호	
③대표자 성명		④전화번호	
⑤소재지		⑥전자우편주소	

2. 기초자료 명세

(단위 : 명)

⑦소속 공인회계사 수						
⑧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	합 계	15년 이상 (1인당 120점)	10년 이상 (1인당 115점)	6년 이상 (1인당 110점)	2년 이상 (1인당 100점)	2년 미만 (1인당 80점)

첨부서류

소속 공인회계사별 경력기간 세부 현황자료

작성방법

1. 기본사항(①~⑥)

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
2. 기초자료 명세(⑦~⑧)

가. “⑦소속 공인회계사 수” 란은 9월 1일 현재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에서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4항에 따라 실무수습 등을 이수하여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 수를 적습니다.

나. “⑧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 수” 란은 ⑦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를 경력기간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